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07. 9. 10.

사회건설위원회

1. 審 查 經 過

- 가. 제출일자 : 2007년 8월 29일
- 나. 제출자 : 영등포구청장
- 다. 회부일자 : 2007년 9월 4일
- 라. 상정일자 : 제130회 임시회 제1차 위원회(2007년 9월 5일)

2. 提 案 說 明 의 要 旨 (제안설명자 : 건설교통국장 이 광 세)

가. 제 정 이 유

-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같은법 시행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나. 주 요 내 용

- 자전거이용의 안전·편의·활성화를 위하여 구청장과 구민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3조부터 제4조)
- 자전거이용 시설의 정비계획을 5년 단위로 수립하도록 하고 이용시설의 세부 정비지침을 마련하도록 함(안 제5조)
- 지하철역, 버스정류소, 공원 등 주민들이 자전거를 많이 이용하는 장소에 자전거 주차장을 우선적으로 설치토록 하고, 주차장이용 요금은 무료를 원칙으로 하되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자전거는 자전거 주차장을 우선 이용할 수 있도록 함(안 제6조부터 제9조)
- 자전거 정비소·대여소의 설치·운영근거를 마련하고 공공기관, 학교 등에 자전거이용의 시범기관을 지정·운영함(안 제10조부터 제11조)
- 우리 주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빌려주는 우리구 소유의 영통이자전거 운영근거를 규정함(안 제14조부터 제15조)

3. 專門委員 檢討報告의 要旨 (專門委員 이 남 식)

- 본 조례안은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같은법 시행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출된 제정조례로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보면
- 안 제3조부터 제4조까지는 자전거이용의 안전과 편의 및 활성화를 위하여 구청장과 구민의 책무를 규정하고 있고
- 안 제5조에는 자전거이용 시설의 정비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매년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한 바 이는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5조에 근거하여 체계적인 자전거이용 활성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며
- 안 제6조부터 제9조까지는 지하철역, 버스정류소, 공원 등 구민들이 자전거를 많이 이용하는 장소에 자전거 주차장을 우선적으로 설치하도록 하고, 주차장이용 요금은 무료를 원칙으로 하되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2조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자전거는 자전거 주차장을 우선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 안 제10조부터 제11조까지는 자전거 정비소, 대여소의 설치·운영 근거를 마련하고 공공기관·학교 등에 자전거이용의 시범기관을 지정·운영하도록 하였고
- 안 제14조부터 제15조까지는 우리 구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무료로 빌려주는 우리 구 소유의 영롱이 자전거의 운영근거를 규정한 것으로 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법률 및 같은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서울특별시 조례에 근거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려는 것으로 본 조례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됨.

4. 審査結課 : 原案可決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제정)

의안 번호	88
----------	----

제출연월일 : 2007. 8. .

제 출 자 : 영등포구청장

1. 제정이유

「자전거이용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동법 시행령 제9조의 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전거이용자의 안전과 편의를 도모하고 쾌적한 이용환경을 조성하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가. 자전거 이용자의 안전과 편의를 위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의 기본책무와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한 구민의 권리와 책무를 규정함 (안 제3조 및 제4조)
- 나. 영등포구청장은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한 정비계획을 매 5년마다 수립하고, 매년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정비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을 규정함 (안 제5조)
- 다. 공원, 하천, 지하철역, 버스정류소, 공공청사 등 자전거의 이용이 많거나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장소에 자전거주차장의 우선설치와 자전거주차장의 유지관리, 주차요금 등 운영방안을 규정함 (안 제6조, 안 제7조, 안 제8조, 안 제9조)
- 라. 자전거이용활성화를 위한 자전거정비소 및 대여소 운영, 시범기관의 지정과 운영, 민간단체 및 자전거이용자에 대한 지원방안 등 기타 자전거이용활성화 시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10조 내지 제16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자전거이용활성화에 관한 법률

자전거이용활성화에 관한 법률시행령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없음

다. 규제심사 : 해당없음

라. 입법예고(2007. 7.24. ~2007. 8. 6.) 결과 : 의견없음

마. 입법예고 기간 단축 사유 : 관계법령에서 위임한 수혜적 제정으로 보
다 신속한 혜택 지원을 위하여 입법예고 기간을 단축하고자 함

바 기타사항 : 별도조치 필요없음

붙임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제정) 1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전거이용의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전거주차장”이란 자전거 주차장치를 설치하고 자전거의 주차를 위하여 일반의 이용에 제공되는 장소를 말한다.
2. “자전거보관소”란 자전거 주차장치 등 자전거 보관시설을 구비하고 보관 업무를 수행하는 시설을 말한다.
3. “자전거정비소”란 자전거의 이상 유무를 점검하고 고장이 난 부분을 수리하는 시설을 말한다.
4. “자전거대여소”란 자전거를 이용하고자 하는 자에게 자전거를 무상 또는 유상으로 빌려주는 시설을 말한다.
5. “영롱이자전거”란 관내에 거주하는 주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빌려주는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이하 “구”라 한다) 소유의 자전거를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자전거이용자의 안전과 편의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자전거이용 여건의 개선 및 안전성 확보에 관한 사항
2. 자전거이용시설의 설치 및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3.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한 주민 참여와 협력에 관한 사항

제4조(주민의 권리와 책무) 주민은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권리와 책무를 갖는다.

1. 안전하고 편리하게 자전거를 이용할 권리
2. 자전거이용 활성화 시책의 수립과 추진에 관하여 알 권리
3. 자전거이용의 활성화 시책에 참여하고 협력할 책무

제2장 자전거이용 시설의 정비

제5조(정비계획의 수립) ① 구청장은 법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자전거이용 시설의 정비계획(이하 “정비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고, 매년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정비계획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서울특별시 자전거이용시설의 정비계획에서 위임된 사항
2. 자전거이용 여건의 개선목표와 시책방향
3. 자전거이용 여건의 변화와 전망
4. 자전거이용자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방안
5. 자전거이용에 관한 분석과 개선방향
6. 사업시행에 소요되는 비용의 산정과 재원의 조달방안
7. 그밖에 자전거이용 여건의 개선에 필요한 사항

③ 구청장은 정비계획을 수립하거나 주요사항을 결정하려면 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시민단체나 관련 전문가 등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

④ 구청장은 도시계획 또는 교통계획 등 자전거이용 여건과 관련이 있는 주요계획이 수립되거나 변경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정비계획을 최대한 반영하여야 한다.

⑤ 구청장은 자전거이용 활성화와 관련된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실무부서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3장 자전거주차장 설치 및 운영

제6조(자전거주차장의 설치) ① 구청장은 지하철역, 버스정류소, 공원, 하천, 공공청사 등 자전거의 이용이 많거나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장소에 자전거주차장을 우선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② 법 제11조 제2항에 의거 구청장의 권장에 따라 자전거주차장을 설치하는 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자전거주차장의 설치비용을 보조·융자할 수 있다.

제7조(자전거주차장의 유지·관리) ① 자전거주차장의 설치·관리자는 법령과 조례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자전거주차장을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② 자전거주차장의 설치·관리자는 자전거이용자가 자전거주차장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자전거주차장치 등 자전거이용시설을 항상 점검하고 보수하여야 한다.

③ 자전거주차장의 설치·관리자는 자전거주차장과 주차된 자전거 등이 도시미관을 해치지 않도록 유지·관리 하여야 한다.

제8조(자전거 주차요금) 법 제11조에 따라 설치된 자전거주차장의 주차요금은 무료로 한다. 다만, 자전거주차장의 관리·운영을 민간단체 등에 위탁하는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주차요금을 별표의 범위 내에서 규칙으로 정하여 부과할 수 있다.

제9조(자전거주차장의 운영 등) ① 자전거주차장의 설치·관리자는 법 제22조에 따라 등록된 자전거는 자전거주차장에 우선하여 주차될 수 있도록 배려하여야 한다.

② 자전거주차장의 설치·관리자는 주차 후 10일 이상 같은 장소에 무단으로 방치된 자전거에 대하여 자전거소유자나 위탁자에게 무단방치 여부를 확인하고 무단방치로 판명된 경우에는 법 제20조와 영 제11조에 따라 처분할 수 있다.

제4장 자전거이용의 활성화 시책

제10조(자전거정비소·대여소의 설치·운영) ① 구청장은 자전거이용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하철역, 버스정류소, 공원, 하천, 공공청사 등 자전거의 이용수요가 많은 장소나 그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곳에 자전거정비소와 대여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자전거정비소·대여소의 이용요금, 운영방법 등은 자전거주차장에 준하여 규칙으로 정한다.

③ 민간단체 등 구청장 이외의 자가 자전거정비소·대여소를 설치·운영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그 비용을 보조·융자할 수 있다.

제11조(시범기관의 지정·운영) ① 구청장은 자전거이용의 생활화를 위하여 공공기관, 민간기업, 학교, 민간단체 등을 시범기관으로 지정·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시범기관에는 자전거보관소·정비소 등의 설치에 필요한 행정·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자전거시범학교로 지정한 경우 학생들이 주로 이용하는 통학로에 교통안전표지판, 안전시설 등을 우선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제12조(민간단체 및 자전거이용자에 대한 지원) 구청장은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발굴하고 실천하는 민간단체 등에 비용을 보조하거나 기업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으며, 자전거이용자에 대한 지원시책을 적극 마련하여야 한다.

제13조(자전거이용의 날 지정·운영) 구청장은 자전거이용의 활성화를 위한 적극적인 주민참여와 홍보를 위하여 자전거이용의 날을 지정·운영할 수 있다.

제14조(영릉이자전거의 비치·운영) ① 구청장은 자전거이용자의 편의와 자전거이용의 활성화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곳에 영릉이자전거를 비치·운영할 수 있다.

② 영롱이자전거의 이용요금은 무료로 한다.

제15조(영롱이자전거의 변상책임) ① 제14조에 따라 사용자가 자전거를 사용하던 중 사용자의 과실로 발생한 파손 또는 도난을 당한 경우에는 원상복구하거나 원상복구에 소요되는 비용을 변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의 고의 또는 부주의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원상복구의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16조(자전거이용자의 안전성 확보) 구청장은 자전거이용자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자전거이용 시 안전모 착용과 자전거 후미등 부착을 권유하고 그 밖에 안전성 확보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5장 보칙

제17조(권한의 위탁) ① 구청장은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설치한 자전거주차장·정비소·대여소의 관리를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참여하는 민간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자전거이용 활성화 시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수탁자에게 시설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장부 또는 서류를 조사·검사하게 할 수 있다.

제1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자전거주차 요금표(제8조 관련)

(단위 : 원/ 구획)

구 분	1회 주차시 (1시간당)	1일 주차권	월 정기권
주차요금	200	1,000	15,000